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마.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 - 1)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
 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 상 위반
가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	법 제110조	90	150	300

정제도를 위반한 경우	제3항제1호			
나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호	90	150	300
다. 법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 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3호	90	150	300
라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 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2항제1호	300	500	1,000
마. 법 제21조제2항(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 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4호	90	150	300
바. 법 제22조(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5호	90	150	300
사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6호	90	150	300
아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7호	90	150	300
자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8호	90	150	300
차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9호	90	150	300
카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 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0호	90	150	300
타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1호	90	150	300
파.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2호	90	150	300
하.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 가 없이 스킨다이빙·스쿠버다이	법 제110조 제3항제13호	90	150	300

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				
거.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4호	90	150	300
너. 삭제 <2020. 6. 2.>				
더. 삭제 <2020. 6. 2.>				
러. 삭제 <2020. 6. 2.>				
머.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·변조·훼손한 경우	법 제110조 제1항	600	1,000	2,000
버. 법 제41조의3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5호의6		300	
서. 법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5호	90	150	300
어.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	법 제110조 제4항	60	100	200
저.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7호		200	
처. 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8호		300	
커. 법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18호의2		200	
터.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5항제1호		30	

<p>퍼.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3항제19호</p>		200		
<p>허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·확인·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2항제2호</p>	300	500	1,000	
<p>고.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2항제3호</p>	300	500	1,000	
<p>노. 법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5항제2호</p>		50		
<p>도.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2항제4호</p>	300	500	1,000	
<p>로.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2항제4호</p>	300	500	1,000	
<p>모.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2항제4호</p>	300	500	1,000	
<p>보.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2항제4호</p>	300	500	1,000	
<p>소. 법 제67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110조 제3항제22호</p>	90	150	300	
<p>오.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</p>	<p>법 제110조</p>	90	150	300	

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	제3항제22호			
조. 법 제70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2호	90	150	300
초.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할 때 앞지르기 하는 배가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2항제4호	300	500	1,000
코. 법 제72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2항제4호	300	500	1,000
토. 법 제73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2항제4호	300	500	1,000
포. 법 제74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2호	90	150	300
호. 법 제75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2호	90	150	300
구. 법 제76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,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(법 제7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)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2호	90	150	300
누. 법 제77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	법 제110조 제2항제4호	300	500	1,000

을 위반한 경우				
두. 법 제78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3호	90	150	300
루.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·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3호	90	150	300
무.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, 정박선, 얹혀 있는 선박,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이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3호	90	150	300
부. 법 제91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4호	90	150	300
수. 법 제92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4호	90	150	300
우. 법 제93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4호	90	150	300
주. 법 제94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4호	90	150	300
추. 법 제95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4호	90	150	300
쿠. 법 제96조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0조 제3항제22호	90	150	300